

「교원인사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2. 2. 28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1.) → 2023. 3. 6. 개정 판 (시행 2023. 3. 1.)

바뀐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86/compare?from=1295&to=1425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7:26:38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) ① 본 법인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51조 및 제53조,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.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(위원장), <u>교무부처장(서기)</u> , 부총장, 교목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대외협력처장, 연구산학처장, 입학처장으로 구성하며, 해당 학장, <u>사무처장</u> 및 총장특보는 초청위원으로 한다. (개정 2016-02-29)	제2조(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) ① 본 법인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51조 및 제53조, 제5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.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(위원장), 부총장, 교목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<u>사무처장</u> , 대외국제처장, 연구산학처장, 입학처장, <u>교무부처장(간사)</u> 으로 구성하며, 해당 학장 및 총장특보는 초청위원으로 한다. (개정 2016-02-29)
제11조(임용 절차)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. 다만,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,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, 재임용, 휴직,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.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<u>호적등본 및 침례증서 등</u>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 ③ ~ ⑦ <삭제 2005-02-24>	제11조(임용 절차)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. 다만, 임용장의 교부는 신 규채용, 승진발령의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전보, 재임용, 휴직, 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. ②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채용보고 서식에 준한 서류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 ③ ~ ⑦ <삭제 2005-02-24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원인사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(위원장), 부총장, 교목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대외국제처장, 연구산학처장, 입학처장, 교무부처장(간사)으로 구성하며, 해당 학장 및 총장특보는 초청위원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호적등본 및 침례증서 등 학교”를 “학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